

(주)아모레퍼시픽그룹 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구성 및 자격)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4조 (대표감사위원)

-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대표감사위원 유고시에는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5조 (종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④ 대표감사위원은 경영진, 재무담당 임원, 내부 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으로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대표감사위원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감사위원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된 날짜가 빠른 순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선임된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협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직 무

제9조 (직무)

위원회는 법령에 정하는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4.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검토
5.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6.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대리인 지정에 대한 동의
9.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10.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2.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추천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검토
15.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내역 검토 및 평가
16.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제10조 (감사록)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인의 조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인 협력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2조 (간 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